

# 재난안전정보 수집·공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Collecting and Sharing Disaster Safety Information

표 경 수 (Kyung-Soo, Pyo)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업연구원

논문접수 : 2017. 8. 18.

심사게시 : 2017. 8. 18.

게재확정 : 2017. 9. 14.

### 목 차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II. 현행 재난관리정보 법제의 문제점
  - 1. 재난안전법상 재난 관련 정보의 체계상 문제점
  - 2. 개별법상 재난 관련 정보의 성격 및 내용 분석
- III. 재난안전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1. 현행 법제도의 개선방향
  - 2.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를 포괄하는 통합적 재난안전정보 공유플랫폼 구축
  - 3. '재난안전정보' 개념의 법정(法定) 및 지정절차 마련
  - 4. 재난안전정보 보유기관장의 정보제공·연계 의무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 5. 비공개 재난·안전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 방안 강구
- IV. 결론 및 제언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재난안전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현행 법령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안전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및 이용이 어렵고, 기관간의 정보 공유가 포괄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리고 재난 관련 개별법상 정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 개별법상의 정보 중 행정안전부로 전달·공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공동이용이라는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행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공유 플랫폼의 구축 근거, 통합적 재난안전정보 개념 정의, 정보제공·연계의 실효성 확보, 비공개 정보의 연계 확보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합적 재난안전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에게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 재난관리정보 공동이용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을 포괄하는 재난안전정보를 정의하고 지정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안전법에 재난정보의 정의와 대상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난안전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제공·연계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정보의 최신성·정확성 유지 및 표준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재난·안전 관련 정보의 제공·연계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 보호나 대규모 재난관리를 위해 공동이용하여야 하는 정보의 경우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연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위 법령의 정비 범위, 유관기관간 협의 등 소요 절차 및 시간, 법 개정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전반을 효과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주제어: 재난, 안전, 재난안전정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재난안전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미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안전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재난 예측의 정확도와 재난 발생시 대응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예컨대, 센서를 탑재한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태풍, 지진, 쓰나미 등 자연 재해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SNS 및 검색엔진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텍스트를 수집 및 분석하여 재난 상황 파악 및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난안전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활용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도시침수전조감지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관리시스템, 산림청의 산불 위험예보시스템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의 대형화 및 복합화 경향을 고려하면, 기관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난안전정보 공유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기반시설이 고도화되고 연결성이 강화됨에 따라, 어느 한 부분에서 발생한 재해가 엄청난 속도와 범위로 다른 부분에게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자연 재해와 사회재난이 복합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난의 원인 혹은 유형별 대응체계와 정보시스템은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양한 채널로부터 수집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난안전정보 공유플랫폼’의 핵심적인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통합적’ 재난안전정보 공유플랫폼의 위상에 걸맞은 정도로 이를 통한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재난안전 관련 정보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 둘째, 재난안전정보를 보유하는 기관과 상호연계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연계 혹은 제공되는 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안전정보 공유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위와 같은 핵심 요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재난안전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구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령 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공유플랫폼을 통하여 빅데이터 분석, IoT 활용 관측, SNS네트워크 등의 첨단기술

을 활용한 효과적 재난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다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II. 현행 재난관리정보 법제의 문제점

### 1. 재난안전법상 재난 관련 정보의 체계상 문제점

현행 재난안전법상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 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가. ‘재난’ 및 ‘안전’의 이원적 체계로 인한 효율적 정보수집·이용의 어려움

현행 재난안전법상 정보의 수집·이용은 ‘재난’ 및 ‘안전’의 두 개념을 각각 그 중심으로 하는 이원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중복적 수집 혹은 불명확한 정보범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재난’과 ‘안전’ 두 개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념을 중심으로 각각 서로 다른 개념 정의, 관리 개념, 관리 기준, 정보의 범위, 정보 혹은 통신 시스템, 정보의 공동이용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정보의 수집·이용·관리와 관련하여 비효율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물론 ‘재난관리정보’<sup>1)</sup>와 ‘안전정보’<sup>2)</sup>는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활동인 재난관리를 위한 정보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는 그 취지도 달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정보와 안전정보에 속하는 정보의 면면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를 통하여 이를 비교하도록 하였다.

살피건대, 재난관리정보의 핵심이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에 있음을 제외하고는 안전정보로서 수집되는 정보와 그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재난관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에는 ‘재난’ 중심의 체계와 ‘안전’ 중심의 체계 사이의 중복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1)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함.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안전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함.

<p>재난관리정보 (재난안전법 제3조제10호)</p>	<p>안전정보 (재난안전법 제66조의7)</p>
<p>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p>	<p>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안전정책 등에 관한 정보</p> <p><b>시행령 제73조의7</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연재난, 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지역별 통계, 내용 및 지리정보(좌표 또는 주소를 말한다.)</li> <li>2.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안전정책에 관한 자료</li> <li>3. 재난등의 유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정보, 지역별 통계, 지리정보 그 밖에 재난등에 관한 안전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li> </ol>

비록 양 정보의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보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무엇보다도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ICT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의 대형화 및 복합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관련 정보들이 다양하고 방대하게 수집·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근본적으로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 체계와 ‘안전관리’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 시설 및 물건 관련 개별법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효과적 정보수집의 어려움

현행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정보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로 정의되며,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이를 더 이상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재난관리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유하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이를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 정보제공 혹은 연계의 의무가 없는 이상 자발적 협조를 통하여 정보가 수집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다. 재난관리정보의 비상시적·부분적 공동이용의 한계**

현행 재난안전법 및 시행령에서는 기관들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 이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정보를 재난관리정보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동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현행 재난안전법상 종합적 재난관리통신체계 내에서의 공동이용은 (1) 이용기관의 신청, (2)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3) 보유기관의 동의에 따라서, 비상시적·부분적 정보공유를 시도하는데 그치고 있다.

즉, 일정한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의한 신청을 계기로 그 신청된 정보에 한하여 연계 혹은 제공에 의한 공동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정보의 ‘상시적’인 공동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른바 ‘소재정보’가 공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포괄적’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공동이용하여야 할 재난관리정보의 범위로서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정보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로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관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직권으로 기관간 공동이용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재난관리정보 전반에 걸쳐 포괄적·상시적 공동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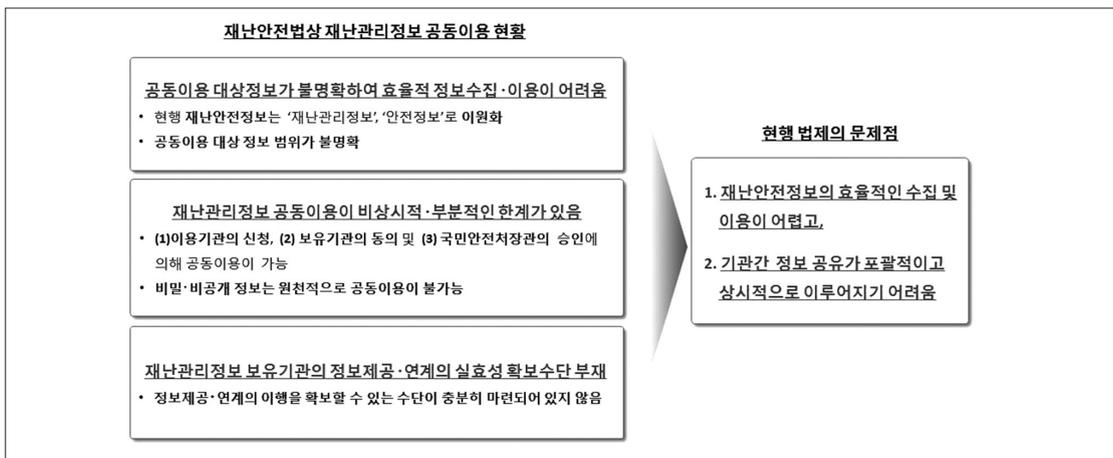
#### **라.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제공·연계 실효성 확보수단 부재**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들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이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제공·연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론 법 제74조의2제1항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를 부

과함으로써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는 그 이행을 실효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 첫째, 공동이용 하여야 할 대상인 ‘재난관리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 둘째, 그 구체적 절차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83조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에 따르면 그 공동이용이 이용기관의 신청, 보유기관의 동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위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는 보유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시 동의에 ‘협조’할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 ‘동의시 협조 의무’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령 제8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재난관리정보의 개념 및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유기관의 협조의무 이행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셋째, 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할 때, 법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청한 재난관리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공동이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위 두 번째 경우와 같이 공동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국가 중대한 이익’과 같은 불확정 개념을 통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것 역시 보유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지적한 주요 문제점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재난안전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재난관리 관련 기관간 포괄적·상시적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그에 앞서 이하에서는 재난안전법과 더불어 광의의 ‘재난안전법제’에 속하는 각종 재난 유형별 개별법상 재난 관련 정보의 전달체계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재난안전정보 전달체계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재난안전정보’로서 연계·공동이용 되어야 할 개별법상 재난 관련 정보의 법령상 근거를 파악하고자 한다.

## 2. 개별법상 재난 관련 정보의 성격 및 내용 분석

개별법상 재난 관련 정보를 그 성격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재난 관련 개별법상 정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 개별법상의 정보 중 행정안전부로 전달·공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공동이용이라는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다.

정보의 성격	정보의 법적 근거 및 내용
정보체계· 정보시스템· 정보망· 데이터베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정보체계</li> <li>• 자연재해대책법상 종합적 재해정보체계</li> <li>• 지진재해대책법상 지진·화산활동 관측자료 공유체계</li> <li>• 기상법상 기상정보시스템</li> <li>• 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상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li> <li>•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정보체계</li> <li>• 산지관리법상 산지관리정보체계</li> <li>• 산림보호법상 산사태정보체계</li> <li>• 사망사업법상 사망담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li> <li>•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자원정보체계</li> <li>•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li> <li>•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li> <li>• 항만법상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li> <li>• 항만법상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li> <li>•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출항·입항정보시스템</li> <li>•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li> <li>•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li> </ul>

정보의 성격	정보의 법적 근거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li> <li>• 주차장법상 기계식주차장 정보망</li> <li>•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상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li> <li>•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초고층 건축물 등의 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li> <li>•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저수지·댐의 정보체계</li> <li>•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계 및 지반재해위험지도</li> <li>•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상 생활주변방사선종합정보시스템</li> <li>•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파괴검사기술정보관리체계</li> <li>•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정보체계</li> <li>•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li> <li>•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li> <li>• 수도법상 상수원 정보관리체계</li> <l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li> <li>•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li> <li>•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차량출입정보관리체계</li> <l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li> <li>•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안전정보관리체계</li> <li>• 식품안전기본법상 통합식품안전정보망</li> <li>• 식품안전법상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li> <li>•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li> <li>•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기계 등 안전 관련 종합정보망</li> </ul>
<p>관리체계· 대응체계· 관리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재해대책법상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li> <li>•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li> <li>• 해사안전법상 선박교통관제</li> <li>•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재난관리 시스템</li> <li>•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li> <li>•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 및 책임보험전산망</li> <li>•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종합방재실 및 종합재난관리체계</li> <li>•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li> <li>•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안전긴급대응체계</li> </ul>

정보의 성격	정보의 법적 근거 및 내용
일차수집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대장</li> <li>• 산림보호법상 산사태예측정보</li> <li>• 교통안전법상 교통사고관련자료</li> <li>•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정보</li> <li>• 철도안전법상 영상기록장치 영상기록</li> <li>•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영상기록</li> <li>•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사실 및 사고기록대장</li> <li>• 전기사업법상 전기재해통계</li> <li>•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정보</li> <l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 정보</li> <l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기록</li> <li>• 식품안전법상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li> </ul>
관측소·관측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재해대책법상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 관측결과</li> <li>• 기상법상 기상관측망·해양기상관측망·항공기상관측망·기상위성관측망</li> <li>• 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상 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한 관측소 및 관측망</li> <li>•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도 측정전산망</li> <li>•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위성관측망</li> <li>•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상 오존층 관측</li> <li>•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실내공기질 측정망</li> </ul>
정보센터·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가스사업법상 굴착공사정보 지원센터</li> <li>• 대기환경보전법상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li> <li>• 수도법상 국가수도정보센터</li> <li>• 식품안전법상 식품안전정보원</li> <li>•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정보공유·분석센터</li> </ul>
상황실·본부·지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기본법상 119 종합상황실</li> <li>•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해수면 수난구호 중앙구조본부 및 종합상황실</li> <li>•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상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li> </ul>

정보의 성격	정보의 법적 근거 및 내용
신고·보고·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보호법상 산사태 신고 및 보고</li> <li>• 철도안전법상 철도사고 보고</li> <li>•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상 항공·철도사고 발생통보</li> <li>• 해사안전법상 해양사고 신고</li> <li>•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조난사실 및 구난작업 신고</li> <li>•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조난통신</li> <li>•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사고발생의 보고</li> <li>•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고 신고</li> <li>•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사고 보고</li> <li>•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 사고보고</li> <li>• 전기사업법상 중대한 전기사고 보고</li> <li>•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가스사고 보고</li> <li>•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상 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위협 보고</li> <li>•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상 방사능 사고 보고</li> <li>•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 신고</li> <l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발생의 신고·보고·통보</li> <l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이동 신고</li> <li>•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li> <li>•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li> <li>• 식품안전법상 식중독 보고</li> <li>•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해발생 신고</li> </ul>
공유·전파·통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법상 기상예보·특보 및 긴급방송</li> <li>• 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상 지진조기경보체제</li> <li>•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정보 공유 및 전파</li> <li>•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상 방사능 재난 선포·보고·통보</li> <li>•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li> <li>•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경보</li> <l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정보공개</li> <li>•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공개</li> <l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정보통신망</li> <li>•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li> <li>•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 이용</li> </ul>

## 법제논단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보유 혹은 구축·운영하거나 행정안전부에 전달·공유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연재해대책법상 종합적 재해정보체계</li><li>•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정보체계</li><li>•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출항·입항정보시스템 ·</li><li>•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상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li><li>•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li><li>•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 및 책임보험전산망</li><li>•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저수지·댐의 정보체계</li><li>•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계 및 지방재해위험지도</li></ul>
-----------------------	---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재난 관련 개별법상 각종 정보가 재난안전법상 정보전달체계로 대부분 연계되고 있지 않으며, 조사한 개별법상 정보 중 일부(8건)만이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법상 수집·축적·전달되는 정보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보유 혹은 구축·운영하거나 행정안전부에 전달·공유되는 정보가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재난 관련 정보의 유통에 있어서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 Ⅲ. 재난안전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1. 현행 법제도의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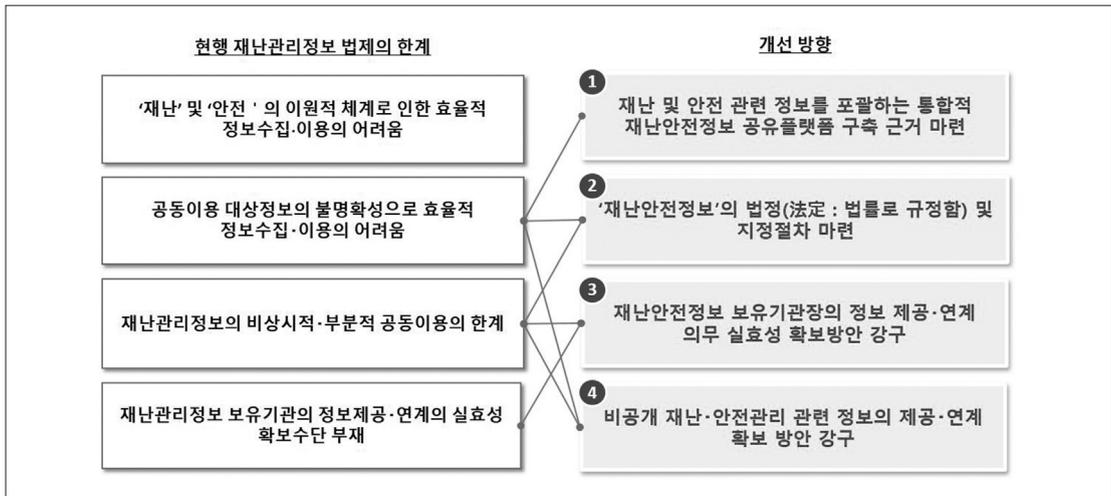
주지하다시피, 재난 관련 법제에 있어서 ‘기본법’에 해당하는 재난안전법은 개별법이 대체로 완비된 이후에 제정된 것으로서, 그 후 현재까지 재난안전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한

개별법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둘 사이의 정합성에 의문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앞서 개별법상 재난 관련 정보에 대한 분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법률에 따른 정보체계, 정보센터, 관리체계, 관측망, 최초 생성 정보에 대한 신고·보고·통보, 정보의 공유·전파 등이 재난안전법상 정보전달체계에 거의 연계되고 있지 않다.

개별법상 수집·축적·전달되는 정보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보유 혹은 구축·운영하거나 행정안전부에 전달·공유되는 정보가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적어도 재난 관련 정보의 유통에 있어서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확보하고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어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복합재난 발생과 같이 개별법 단위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재난안전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현행 재난대응체계를 고려할 때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는 개별법상의 정보들이 궁극적으로 수합되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구축·운영됨으로써, 재난관리 관련 유관기관들이 상시적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재난관리 관련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합되고 상시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정보공유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클 뿐 아니라, 이에 맞추어 체계적 계획과 구상 하에 이를 위한 관련 개별법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현행 재난안전정보 전달체계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크게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앞서 제시한 현행 재난관리정보 법제의 문제점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 2.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를 포괄하는 통합적 재난안전정보 공유플랫폼 구축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제1항) 및 종합적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제3항)에 따른 관련 기관간 정보의 공동이용은 현재로서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널리 포괄하는 통합적 재난안전정보 공유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적 재난안전정보 공유플랫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제3항의 종합적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그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난’ 및 ‘안전’ 개념을 ‘재난안전정보’ 개념으로 일원화하여 통합하는 방향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행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두 정보시스템의 실제적 기능과 목적 여하에 따라서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유관기관 정보의 연계·수집을 통한 관리라는 점에서는 두 정보시스템에 공통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두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존치시키되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li> <li>2.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li> <li>3.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li> <li>4.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li> </ol>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⑤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삭제)</p> <p>혹은 주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임.</p> <p>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 제74조 재난안전정보통신체계를 통하여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 3. ‘재난안전정보’ 개념의 법정(法定) 및 지정절차 마련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제3조 재난관리정보 및 제66조의7 안전정보 개념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유플랫폼을 통한 관련 기관간 상시적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의 범위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보다는 이 두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 상위개념이면서, 필요에 따라 그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재난안전정보’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난안전정보’ 개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의할 때에, 그 개념의 내용으로서 재난유형별로 마련되어 있는 각 개별법상 재난 관련 정보체계를 구체적으로 명

시한다면 일반법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종합적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 특별법에 해당하는 재난유형별 개별법상 정보체계와의 체계적 관계가 명확해질 것이다.

이 밖에도 각종 재난유형에 따라서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범위는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통하여 재난안전정보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처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통하여 재난안전정보에 포함되는 정보가 공유플랫폼에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공동이용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하기 보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상위의 의결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정보보유기관의 제공 혹은 연계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위와 같은 결정을 담당할 의결기구는 적어도 시행령(대통령령)에 그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또 다른 가능한 방안으로는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거나, 혹은 이와 유사한 위상을 갖는 재난안전정보 관장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p> <p>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p>	<p>제3조(정의)</p> <p>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 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p> <p>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에 따른 재해정보</p> <p>나.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p> <p>다. 「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진정보</p> <p>라.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p> <p>마.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p> <p>...</p> <p>N.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p>

#### 4. 재난안전정보 보유기관장의 정보제공·연계 의무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재난안전정보의 공유플랫폼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재난안전정보’로 정의되는 모든 정보가 공유플랫폼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난안전정보로서 공유플랫폼에 연계될 정보의 보유기관장에게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제7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종합적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통한 연계운영 및 표준화에 있어서 재난관련기관<sup>3)</sup>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제74조의2제1항에서는 재난관련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다른 재난관련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83조제4항에서 정보보유기관장은 공동이용을 동의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83조제5항에서는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종합적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통하여 재난관리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상과 같은 현행 법령상의 규정을 바탕으로 이미 공동이용 대상정보로 동의가 이루어진 정보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공동이용 대상정보로의 동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단지 협조가 요구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① ~ ③ (생략)	④ 재난관리정보 보유기관은 해당 정보를 제3항에 따른 종합적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연계·제공하여야 하고 그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연계·제공되는 정보의 표준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와 관련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말함.

각종 표준을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 관련 정보목록을 조사·작성하여 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재난관리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연계·공동이용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5항에 따른 재난관리 관련 정보목록의 조사·작성과 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비공개 재난·안전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 방안 강구

비록 해당 재난안전정보가 ‘비공개정보’, 즉 현행 동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sup>4)</sup>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이를 공유플랫폼에 연계시켜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재난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관리정보로서 공동이용 승인이 불가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의 규모, 유형, 대상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나마 공동이용승인 불가 대상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 목적의 정당성, 이용대상정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가. 비밀·비공개 정보 공동이용의 필요성 및 정당성 : 실무적 관점

우리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의 정보 비공개로 인한 재난관리 실패를 경험한바 있다.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서는 “재난”을 정의하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 재난을 포함시키고 있고, 사회재난 속에 “감염병의 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서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예방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세웠던 메르스 관리지침(2014.12. 2판)에서는 초판에 공개했던 지역별 국가지정 격리병원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알리지를 았았다. 5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작성된 3판에서는 이들 병원 명단을 삭제함으로써 이들 격리병원이 메르스를 확산시키는 병원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공개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을 공개할 경우 기존 환자와 해당 병원이 있는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비공개했다”고 하였으며, 이는 감염병예방법상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이 사실상 부재하였기 때문으로 인식된다. 이후 메르스 사태를 한창 겪으면서 보건복지부는 신속히 정보공개 관련 규정들을 대폭 손질(2015. 7. 6 신설)하였던 바, 가령 감염병예방법 제4조제3 및 제4항, 제6조제2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동법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정보공개 문제를 입법적으로 명료히 정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함으로써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는 개별 부처의 비공개 결정에 따른 정보 비공개로 인하여 국가적 재난 대응에 실패한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된 신종 재난의 증가에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관점에서 개별 기관 차원의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의 공동이용 가능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재난·안전관리법 체계 내에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나. 개선방안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나마 공동이용승인 불가 대상 정보의 공

동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로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는 신청,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정보보유 기관장의 동의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74조의3(비공개 재난관리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p> <p>① 법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재난관리 관련 정보를 공동이용하고자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2. 법 제1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목적의 정당성, 이용대상정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유기관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이 승인된 정보의 처리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또는 재난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비공개 재난·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 신청, 승인,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I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재난안전정보 수집·공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서 보듯이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를 포괄하는 통합적 재난안전정보 공유플랫폼 구축 근거 및 포괄적·상시적 정보공유를 위한 재난안전정보 공유플랫폼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안전정보’ 개념의 법정(法定) 및 지정절차를 마련하고, 재난안전정보 보유기관장의 정보제공 의무 실효성 및 비공개 재난안전정보의 연계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법 개정안 제74조제4항에 열거된 재난안전정보 및 제74조의3에 따라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비밀 및 비공개 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법 개정안 제74조의2제5항에 따라 설치될 공용이용센터의 구성을 위한 조직 및 정원, 소요예산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재난안전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별도의 지침 혹은 가이드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재난안전 선진국의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서재호·정재범, 국가위기관리 입법론 연구, 법문사
- 안영훈, 우리나라의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2010.10)
- 이재웅·김대호, 재난안전관련 법령과 감독기관 통합을 위한 안전제언,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0.10)
- 두효철·박준형·감혜영·오효정·김용, 국내·외 기관의 재난정보관련 SNS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2017.6)
- 강희조, 빅 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전략, 한국정보기술학회(2016.6)
- 김종업·김형빈,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예측과 재난·안전 정책 방안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17.2)
- 박주혁·조성호, 미국 재난대비시스템(National Preparedness System)의 전략기획 사례연구,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2015.12)

## Abstract

#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Collecting and Sharing Disaster Safety Information

Kyung-Soo, Pyo

Deputy Scientific Directo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current legislation and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revitalize the sharing of disaster safety information.

The effectiv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accident safety information is difficult for the current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the sharing of information among agencies is difficult and ongoing.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information status of disaster related individual laws, most of the information is not shared by the current use of the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under the current Act, which is not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is current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it suggests the improvement directions based on the establishment basis of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definition of integrated disaster safety information concept, securing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providing and linkage, and linking of non-public information.

To establish the basis for establishing an integrated disaster safety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the duty of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holding

organization was given and the basis for establishing the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sharing center was prepared. In order to define the disaster safety information covering ‘disaster’ and ‘safety’ and to define the procedure, the disaster information law and the definition of disaster information were specified in the disaster safety law. In addition,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bligations of the director of disaster safety information, the responsibility of information provided by the holding organization, and the obligation to maintain the accuracy and accuracy of information and observe the standard were explicitly granted. Finally,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on safety-related information and provide security-related information, the legal basis for providing and linking the information through the platform through a certain process has been established.

It would be desirable to promote effective and systematic revision of laws and subordinate statuses by revising the legal system step by step in consideration of the procedures and tie required for the revision of the subordinate statutes, consultation between related agencies, and the difficulty of revising the law.

**Key words : disaster, safety, disaster safety information,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